

번호 17-2

제 목	국문	의료정보 관련된 법률적 고찰				
	영문	Legal aspect of health information system				
저자 및 소속	국문	<p>체영문¹⁾, 이인영²⁾, 김선주, 박준호, 이상규, 문기태, 민혜영, 손명세³⁾ 연세대 보건대학원 보건정보관리학과¹⁾,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²⁾, 연세의대 예방의학교실³⁾</p>				
	영문	<p><u>Chae YM¹⁾, Lee IY²⁾, Kim SJ, Park JH, Lee SG, Mun GT, Min HY, Sohn MS³⁾</u> <u>Department of Health Informatics,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¹⁾,</u> <u>Department of Medical Law and Ethics, Collage of Medicine,</u> <u>Yonsei University²⁾,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u> <u>Public Health, Colla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³⁾</u></p>				
분야	보건관리(○) 역학() 환경()	발표자	일반회원(○) 전공의()	발표 형식	구연(○) 포스터()	
진행상황	연구완료(), 연구중(○) → 완료 예정 시기 : 2000년 12월					

1. 연구 목적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고 사회가 디지털 정보화 사회로 이행되면서 보건의료계도에서도 과거에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환경을 직면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의 모든 분야에서 적절한 대비가 필요하다.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으나 현재 상황은 어떠한 변화가 우리 앞에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예측도 실제적으로는 어려운 상태이며 그러한 변화가 정부차원에서 어떠한 준비를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매우 불투명한 상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러한 사회의 정보화와 디지털화 과정에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경험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도출한다.

둘째, 이에 대한 국내의 법적인 현황, 정보화 선진국의 정책 차원에서의 현황을 분석한다.

셋째, 현행 보건의료 관련 법률에 새로이 담겨야 할 내용을 제시한다.

2. 연구 방법

국내에서 보건의료분야 정보화와 관련하여 발간된 문헌들을 수집하여 이들의 내용을 검토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정보화 선진국의 사례를 파악하여 국내외 보건의료 분야의 정보화에 따른 변화들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변화들에 대해 현재의 법체계를 적용할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법률 조문 검토를 통해서 예측하고 자문회의를 통해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하여 이들 선진국 사례의 국내 적용 가능성 및 타당성에 대해 조사하였고, 현행 보건의료 관련 법률에 보건의료 정보화와 관련하여 새로이 담겨야 할 내용들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검토하였다.

3. 연구 결과

현재 보건의료 분야에서 정보화와 관련하여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로는 인터넷을 통한 건강 정보의 유통, 의료기관의 광고, 약품의 거래 등이고,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들은 전자의무기록, 원격진료 등이다. 현재의 법기반 하에서 보건의료 분야에 있어서의 정보화와 수반된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의료 관련 웹사이트에 관해서는 의료정보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질 확보, 상업적 목적과 결부되어 있는 정보 억제의 두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정부가 법으로 규제할 것인가 혹은 자율규제나 제3자에 의한 인증제도 등에 맡길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의료상담과 관련된 문제들로는 의료정보 사이트를 통한 상담이나 의사와 환자간의 이메일에 의한 교신에 있어서 이러한 것이 의료행위를 구성하느냐의 문제이다. 상담의 허용범위를 단순한 정보의 제공이나 문진까지 가능한지가 문제가 된다.

둘째, 인터넷 기반 의료분야의 전자상거래 도입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의료용품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문제, 예견되는 인터넷 약국의 약품거래에 대한 문제 등이 있으며, 개인 등이 외국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구입하는 것을 허용할 지가 문제된다.

셋째,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전자의무기록의 법적효력을 인정하는 등의 관련법 정비의 필요성, 전자의무기록의 보존방법과 보관시설의 관리에 관한 규정 신설, 원격의료의 시행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의무기록(검사기록, 방사선필름, 음성정보, 동화상 정보 포함)의 전송을 인정하는 문제, 사생활보호와 개인의 의료정보 유출 제한 등이 문제가 된다.

넷째, 원격의료와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원격의료의 범위설정에 있어서 단순한 상담과 진료의 경계를 정하는 문제, 원격의료를 행하는 의료인의 자격과 책임(외국인 의사의 자격, 환자 대 의사간 원격의료, 초진의 경우까지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의 문제가 있다.

4. 고찰

인터넷 의료관련 웹사이트에 관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율규제로 가는 추세이며, 의료정보 사이트가 준수해야 할 윤리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기관에 대해 인증을 실시하는 방법이 현재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 보건의료 정보사이트 인증을 위해 요구되는 가이드라인이 처음 제시된 정도이므로, 관련단체의 자율규제는 정부의 지원받고 공감대 있는 자율규제를 하거나 사용자에게 추천만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병원의 의료용품과 의료소모품은 일반물품이 아니므로 안정성, 유효성 및 유통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전자거래기본법이나 전자서명법과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경우 인터넷 약국에 대한 법률 규정이 있는 주도 있으나, 국내에서는 의약 분업에 의한 원외처방전조차 정착되지 않고 있으므로, 인터넷을 통한 의약품정보와 의약품거래에 대해서는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전자의무기록의 원본 인정뿐만 아니라 전자적인 방법의 저장이나 저장 시스템 관리를 규정하는 법령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는 관련법령에 더불어 관련시설의 인프라 구축 비용의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